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김호진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호진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의 사고 발생 시 해당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응급환자를 배려하는 인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